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회장 주재로 지난 8월 29일(제15회)과 9월 9일(제16회)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5회

- 토론회 개최 계획(안) 승인의 건

- 9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사업무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사항 수락여부 결정의 건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리협회 윤리규약 중 제7조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와 위촉자간에 교섭이 상당히 진행된 것을 알면서 그 위촉자에게 업무위촉의 교섭 또는 그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 제8조 「건축사는 이미 다른 건축사에게 위촉된 일의 실시 또는 완성의 부탁을 위촉자로부터 받았을 경우 당해 건축사와 위촉자 사이의 관계가 해소되었음이 건축사 상호간 또는 협회의 확인이 없이는 위촉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현상설계에 의한 실시설계에 있어 최고의 상을 받은 이외의 건축사는 그 위촉을 거부한다.」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할 의사가 있음을 수락하기로 결의함.

- 수해지구에 대한 대책의 건

-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전국의 수해지구에 대한 이재민에게 의연금 모금방법 및 금액결정 등을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16회

- 수재의연금 모금방법 및 금액 결정의 건

-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에게 사회 사업지원비에서 1천만원을 기탁하기로 결의하고 기탁처 및 방

법은 회장에게 위임함.

- 수해건축물 건축설계비 감면 승인의 건
- 각 시·도지사 및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축설계비 감면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물규모의 경우 50%, 건축신고 대상 건물규모의 경우 무료로 감면해 주고 그에 따른 전국공통운영회비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하여 수납하기로 결의함.

• 건축설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설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때까지 위원을 선임하여 재승인 토록 회장에게 위임하되, 대표위원은 가능한 본 협회 회원으로 선임하기로 함.

• 일반회계 예비비 사업승인의 건

- 예비비 7천7백4만2백원 중 경조비(9백2십만원) 및 보조금(3백만원)으로 1천2백2십만원을 사용하기로 결의함.

•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 지침개정(안) 승인의 건

- 현행대로 진단수수료는 진단료 총액의 50%를 지급기로 결의하고, 회원사에 안전진단 기간이 1개월이내에 처리되고 있다는 사항을 공지하기로 함.

• 건축3단체 역대회장단 초청간담회 개최에 대한 협의

- 건축3단체 역대회장단 초청간담회를 '95. 9. 28(목) 오후 12시에 개최키로 함.

• 전국 건축공학과 교수(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초청 간담회 개최에 대한 협의

- 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토록 함.

『건축사 업무제도의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 협회대강당에서 4백여 회원과 건축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업무제도의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형건설사고의 빈발과 시장개방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업계 등이 건축·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제도·관행 등의 적극적 개선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제1과제 <건축설계 업무제도 개선방안>은 동국대학교 전영일(건축학) 교수가, 제2과제 <건축공사 감리업무 제도 개선방안>은 아주대학교 신동우(건축학) 교수가 각각 설계 및 감리분야 주제발표를 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전교수는 "건축관련 프로세스(Process)에서 우리는 현재 관련주체(건축사, 건축사 각종 컨설팅트, 시공자(도급자), 하도급업자, 현장 감리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많은 문제점의 시초"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각자의 역할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각 주체간의 일종의 '표준계약제도' 같은 규정을 마련, 주체간 분쟁발생 소지를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건축법은 법체계상 너무 복잡하고 애매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명·안전·방재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선 건축행정의 경우 현행처럼 공무원이 설계도서를 직접 검토하기보다 설계자가 건축법 등을 제대로 적용했다는 확인서 첨부 여부만을 검사하는 선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업무를 줄이고, 만약 공사중이나 후에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설계자·시공자 등에 책임을 지게하면 될 것이며, 시정이 불가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되게끔 강력하게 사후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도 후속조치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축관련법이 현재 약 80여종에 이를 만큼 매우 다원화되어 있어 내용상 서로 상충되는 등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가칭)건축기준법으로 통폐합해서 담당부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田교수는 또한 무엇보다도 설계업무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시급하다며 현행 건축설계의 종류와 한계가 불분명하고 공사감리업무 구분은 물론 관련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우선 설계의 경우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명료하게 구분해서 계획설계, 기본설계는 건축사가 작성해서 건축허가·동의 등의 도서로 사용하며, 실시설계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작성토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공 상세도는 시공회사가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설계자와 협의해서 공사감리

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종합건설업면허제'에 대해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관계는 영업의 주체로서의 개념상으로 이해돼야 하나 '건축설계 행위'의 주체는 면허 받은 건축사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고 건축사의 등록여부는 염밀히 생각하면 세금과 보험의 관계이지 '설계행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건축설계업무의 국제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약개념을 도입해서 건축주와의 상호합의정신(Privity of Contract)과 계약서 작성율 유도하고, 철저한 공정거래의 보장을 통해 국내 건축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위있는 설계분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두번째 감리분야 제도개선분야 발표자인 신교수는 "현행 감리제도는 그 법적인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립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법에 따라 유치, 운영되어 감리의 본질에 일관성이 훼손되는 모순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 감리의 본질과 설계자의 감리업무 역할 및 책임 감리기술인력의 충분한 공급 등이 현행감리분야의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감리의 내실화·자속, 설계자에 의한 설계감리와 시공자에 의한 시공감리의 지나친 세부규제를 완화, 현실화해서 프로젝트별로 계약 조항을 이용, 감리제도 정책 위한 기반조성·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감리의 내실화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필수적인 설계자의 고유한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공감리가 설계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감리업무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재설정해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계자의 공사감리는 공사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Design Control)이므로 감리회사에서 하는 시공품질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설계자의 공사감리(설계감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되 공사 품질과 관련되는 시공감리와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자의 공사감리는 "설계의도 해설·지도·자문행위를 시공의 착공이전과 이후의 시점에서 구분해서, 착공이전의 행위를 설계업무에, 착공이전의 행위를 설계업무에 각각 포함시키고 착공이후의 행위를 감리로 간주하여 설계자의 감리 기본업무에 포함시켜 이를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관련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된 시공감리대상을 '다중이용

시설' 등에도 확대적용, 시공자의 공사·품질·안전관리를 감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감리문제는 관련 당사자 집단의 '업역고수나 생존권의 확보차원이 아닌 미래의 Profession에 대한 수요와 위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실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남(현대건설부사장), 김우성(아키프랜건축 대표), 김인철(인제건축 대표), 이용락(건설교통부 서기관), 오시덕(대한주택공사 건설본부장), 안길원(무영건축 대표), 강태석(한건건축 대표), 이종정(아튼건축 대표) 등 8명의 건축설계, 시공분야 전문인들이 참석, 1·2부로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각 분야의 토론자는 토론을 통해 현재 국내의 건설 및 건축업계의 환경에서 건축설계의 창작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건설회사가 설계까지 겸하게 되면 건설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창작성을 표현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한 심의를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모든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설계자가 정부기준대로 설계하면 바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기준화하여야 한다고 촉구였으며,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부결된 것을 자꾸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건축3단체 회장단 조찬회 개최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3단체 조찬회가 지난 9월 28일 오후 12시 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건축3단체 조찬회에는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 및 전임회장단 7명 등 3단체 회장단 및 전임회장 총 28명이 참석하여 건축계 현안문제 및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이번 조찬회에서는 3단체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 3단체 전임회장단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95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심사 발표

우리협회는 21세기 신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

최한『'95한국건축문화대상』작품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79개 작품이 출품된 준공건축물 부문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1차 사진첩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치는 엄정한 심사결과 영예의 대상은 간암건축이 출품한 포스코센터에서 돌아갔으며, 그외 본상 4점, 우수상 3점, 입선 17점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또한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신인부문 및 각 대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은 대상으로 한 학생부문은 각각 16점, 179점이 출품되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한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16일(월) 서울 시립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거행되며 전시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34쪽 참조〉

9월 5일 오전 7시 롯데호텔 프린스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협회 박경환 부회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위원장, 건축학회 김덕재 부회장, 이현호 이사, 건축가협회 김한근 부회장, 정명원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조찬회에서는 GATT체제에 편입시켜 새로운 WTO의 구성 요소로 구축하려는 기술용역의 국제교류, 다자간 협상체제 등 외국시장 개방에 대해 3단체가 공동대처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건축3단체가 주축이 돼 GATT의 대응 실무팀구성, GATT협약에 관한 현상황의 파악과 인식, 인접국가의 GATT 협약 대책 정보수집 및 대국기간 향후 정책방향·전의 등에 대해 중점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가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역할, 기능, 구성방법,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건축3단체 부회장과 국제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각 시·도건축사회에 통보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정관개정은 그동안 한차례의 보완 수정과정을 거쳐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10조 회원의 정계종류 가운데 업무정지가 회원 권리정지로 바뀌며, 회원 제명은 삭제된다. 또한 제13조 임원기준에 부회장 1인은 3인으로 상근 1명, 비상근 2명으로 구성되며, 이사 9인은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15인으로 늘어난다. 제15조 임원선출에 있어서 비상근 부회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호선하기로 했으며, 제20조 총회개최는 기존의 본협회 11월, 건축사회 10월에서 본 협회 10월, 건축사회 11월로 바뀌게 된다. 한편 제33조 건축사회 임원은 간사 3인, 5인(회원 100인 기준)에서 5인, 7인으로 각각 늘어나며, 제35조 건축사회 임원선출에 있어서 부회장은 간사중 간사회에서 호선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수재의연금 기탁



중국 산동성 건축공정관리국 부국장외 9명이 지난 9월 22일 우리 협회를 방문하였다. 지난 4월 26일 중국 건설부 감찰설계사 대표단에 이어 올해에 두번째로 우리협회를 방문한 중국 방문단들은 그동안 한·중수교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온 한·중건축 교류활성화의 결과로 이해되며, 이번 방문단은 한국건축에 대한 정보수집과 한·중 건축발전을 위해 방문했다. 한편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을 대신해서 박경환부회장 및 국제위원들은 이들 방문단을 맞이하여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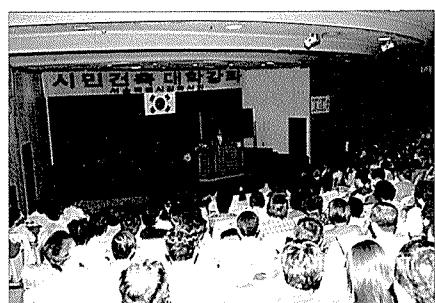
9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본부 및 각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9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합리적인 협회운영과 책임성 있는 업무체계를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하반기 정기감사에는 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본부감사(오인준, 김영석)에 의해 장관 및 제 규정 이행실태, 주요업무 추진현황, 95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사항, 각종 회의 운영사항 등의 일반사항과 95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각종회비 징수 및 관리사항, 제장부 기장상태 등의 경리사항으로 나누어 직접 확인점검 감사로 실시되었으며, 각 시·도건축사회는 오는 10, 11월 중 각 시·도건축사회 감사에 의한 자체감사 후 결과보고에 의한 서면감사로 실시된다.

정관개정 인가

우리협회는 지난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태풍 “캐尼斯”的 영향으로 슬픔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수재의연금을 모집하여 KBS에 성금 5백만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조선일보에 성금 2백만원을, 그리고 경기도 건축사회(회장 최재남)는 경인일보에 성금 2백만원을 각각 기탁하였다.

서울건축사회, 제3기 시민건축 대학 강좌 개설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해 7월에 서 12월까지 약 4개월동안 진행된『시민건축 대학』제2기 강좌에 이어 제3기 강좌를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개설한다. 강의일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3단체 부회장 조찬회 개최

건축계 현안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3단체 부회장 조찬회가 지난

우리협회는 지난 95년도 제2회 임시총회(95. 6. 22)에서 승인된 정관개정안이 지난 9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시민건축대학 제3기 강좌일시

일 시	강 좌	내 용	강 사
10월16일	5강좌	건축시공	장 양 순 (종합건축 동명대표)
10월30일	7강좌	주거문	김 인 철 (종합건축 인제대표)
11월 6일	7강좌	건축설내장식	합 정 도 (서울산업대 건축 공학과 교수)
11월13일	8강좌	건축설비 (에너지관제)	이 정 기 (에너지관리공단 기획과장)
11월20일	9강좌	외국건축에 대한 이해 (주거위주)	이 정 근 (종합건축 우리계회 대표)
11월27일	10강좌	우리건축에 대한 이해 (주거위주)	장 순 용 (삼성건축 대표)

부산건축사회,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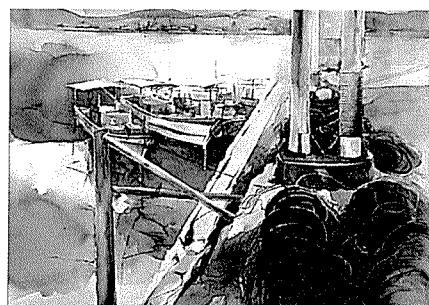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창립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 까지 심포지엄 및 건축작품전을 개최했다. 부산지역이 안고 있는 건축환경에 관한 현안과 21세기 부산의 건축환경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김성곤 동아대 건축과 교수의 사회로 조성기(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건축의 보존과 개발, 김종성((주)서울건축 고문)의 건축교육-건축의 창, 강병희(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건축시공, 생산, 신용재(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도시 주거환경의 질, 정량부(동의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외부공간과 형태, 이성철(부산광역시 주택국장)의 건축행정에 대한 분야별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전시실에서는 회원작품 42점과 학생작품 11점, 오사카 건축사회 초청작품 15점 등의 건축 작품전시회가 전시되었고, 부산건축 어제와 오늘이라는 사진 전시 및 슬라이드가 방영되어 부산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를 했다.

장학금 수여



인천건축사회(회장 송기준)는 95년도 사회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3일 관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건축전공학생 14명에게 총 8백8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총 8개교 14명으로 구성된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인하대(지윤철, 이종봉), 서립인천대(박정남, 임형권), 인하전문대(허기복, 이주연), 인천전문대(이청운, 최화식), 인천기계공공(허 은, 최윤석), 연봉공고(길근영, 김승만), 대현공고(임경환, 박영현) 등이다. 또한 전남 건축사회(회장 노상익)도 전남도내 소재 건축계 후배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전문대학 건축과 1학년 윤현준군 등 4명에게 각 5십만원씩, 순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1학년 박창원 등 4명에게 각 2십5만원씩 총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동 학생들의 졸업 시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강성익 회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수상



서울건축사회 강성익(한국건축) 회원이 지난 9월 25일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서양화부문 입선에 당선되었다. 한국 수채화협회 공모전·미술세계 대상전, 목우회 회원전 등에서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강성익회원은 그동안 건축사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틈틈이 순수한 열정으로 창작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국전에서는 수채화 <신양리 포구>로 입선에 당선됐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건축대전 전시회는 오는 10월 10일부

터 10월 24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며, 강릉·울산·인천 등 지방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석환 회원, 회화전 개최

서울시건축사회 김석환(더울건축)회원이 강남구 청담동 청화화랑에서 오는 10월 24일(금)부터 30일(목)까지 김석환 회화전을 개최한다. 건축가 미술동호회 회원으로서 매년 회원전 출품 및 건축사지 작품발표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석환 회원은 그동안 틈틈이 그린 그림을 모아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다.

'95건축가 미술전 개최

건축가 미술동호회(회장 한창진)는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동승동 예총회관 1층 화랑에서 '95건축가 미술전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전시회는 그간 건축사들이 바쁜 업무 시간 속에서도 틈틈이 순수한 열정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발표해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미술전에는 한창진(한정건축)의 21명의 건축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일 여성건축가 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화련)은 지난 9월 30일(토) 오전 10시 강남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1세기 신주거문화, 여성이 주역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회 한·일 여성건축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혜정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지순(간삼건축), 김진애(서울포럼), 조성룡(조성룡 도시건축연구소), 일본의 오가와 노부꼬(일본여대), 사카모토 가즈나리(동경공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순(간삼건축)회원은 주제 발표문에서 「60년 이후 우리 주택은 욕실,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고, 대청마루가 거실로 바뀌었으며, 80년대



들어서면서 가족구성 형태가 변하면서 부엌-거실의 사회적 공간이 크게 변했다』며『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져 주거변화가 여성위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진애(서울포럼)씨는『여자들이 집을 사고 가구를 고르고 집안을 꾸미면서 실질적으로 집 주인은 여성이 되었다』며『21세기 주거공간은 남성·여성공유/교차 공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5일 건축법을 개정(지난 1월 6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지난 9월 15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건축허기를 신청하면서 설계도서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고 관계공무원이 입지와 더불어 세부기술적인 사항과 건축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일일이 검토한 후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신청 시에는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도록 하여 인·허가공무원은 자연환경보전법 등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법령만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에 관한 세부설계도서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기술자가 책임지고 확인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도록 했으며 둘째, 지금까지는 $85m^2$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100m^2$ 이하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축사뿐만 아니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도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셋째, 연면적 $5천m^2$ 이상인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구조설계는 반드시 구조기

술사가 하도록 하며, 종전에 건축사가 하던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하도록 했다.

또한 넷째,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도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변경하는 면적이 $50m^2$ 이하이거나 변경하는 부분의 높이가 0.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할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층수의 변경이 없이 연면적 또는 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도 사용검사시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섯째, 지금까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32개군으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조·방화·피난 등의 건축기준이 유사하게 적용되는 건축물을 1개군 단위로 하여 총 10개군으로 분류하고 군을 달리 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여섯째, 건축공사시 효과적인 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공사중지·재시공명령권을 부여하고 감리업무내용을 법정화 하는 한편, 연면적 $5천m^2$ 이상의 건축물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사감리자는 기초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 등 공사가 일정한 지도에 다다르면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일곱째로 지금까지는 소규모건축공사의 경우 적영공사로 위장하여 실제시공자가 건축주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여왔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일정자격을 갖춘 실제시공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위법·부실시공의 책임을 추적 규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덟째, 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조정하고 자연녹지 지역 및 보전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m^2$ 에서 $200m^2$ (생산녹지의 경우 현행 $150m^2$)로 완화했으며 아홉째,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축조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는 토목기술자

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설계·감리에 참여한 관계기술자는 설계도서·감리보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여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했고, 열번째, 건축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및 인근주민들간에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교수·변호사·건축사·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도록 하여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 등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소보원, 소비자안전 세미나 개최

최근 건물·교량붕괴 등 각종 대형건설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관련업계의 안전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지난 9월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소비자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명지대학교 이명오(건축방재전공) 교수는 '소비자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 있어 최후진국인 우리는 이제는 보다 본질적이고 지속력있는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구조체나 부품기능 중심의 안전판단 개념에서 진일보해 '공간방재 성능'이라는 '종합적 관점'을 도입, 공간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한 안전환경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보장 권리행사'를 위한 '소비자 미란다 원칙'의 구현 등 보다 강화되고 적극적인 서비스제고와 제조·판매자의 의무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시민단체·건설업계·학계 등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근래 우리사회가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